#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21

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이성윤·김현정·민형배

박희승 • 이춘석 • 한준호

윤준병·김윤덕·이원택

황정아 · 박선원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, 채용서류의 반환을 비롯해 채용과정상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4년 에 제정·시행되고 있음.

그러나 실제 채용에 임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에서의 정보 불 균형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, 구인자가 현행법상 부담하는 의무 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은 미비한 경우가 있어 현행법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,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 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고자 함. 아울러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 고,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직상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(안 제8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후단 중 "고지방법은"을 "구인자는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고지방법은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제9조, 제11조제1항·제4항·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킨 구인자
- 2. 제10조를 위반하여 채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구인자
- 3. 제11조제1항·제4항·제5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하지 않거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거나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구인자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국고보조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채용절 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조(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제8조(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) -----고지)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 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 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고지 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 자는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도 록 노력하여야 하고, 고지방법 제12조(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제12조(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) ① 제9조, 제11조제1 시정명령)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---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 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 정을 명할 수 있다. <신 설> 1.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킨 구인자 2. 제10조를 위반하여 채용 여 <신 설> 부를 알려주지 않은 구인자 3. 제11조제1항·제4항·제5항 을 위반하여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하지 않거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거나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자에게 부담시킨 구인자</u> 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국고보조 등) 국가 및
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
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
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
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
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